
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중산층 주거혁신 NEW STAY 정책	보 도 자 료		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	배포일시	2016. 1. 20(수) 총 3매(본문2)	
담당 부서	주택기금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홍목, 사무관 서지웅, 주무관 이경은 • ☎ (044)201-3341, 4850 / 1599-0001 (콜센터)
보 도 일 시		2016년 1월 2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0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.

- 신혼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-

- 신혼가구(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)가 '16.1.29(금)부터 주택도시 기금 구입·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, 우대 금리도 적용받게 된다.

< 주 요 내 용 >

- ① 디딤돌대출(구입) : 금리 우대(0.2%p),
 대출 신청시기 조정(결혼 2개월 전 → 3개월 전)
- ② 버팀목대출(전세) : 금리 우대(0.2%p),
 한도 상향조정(수도권 1억원 → 1억 2천만원 등)
 대출 신청시기 조정(결혼 2개월 전 → 3개월 전)
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지난 '16.1.14(목) “2016년 정부합동업무 보고회”에서 발표한 『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』 (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)의 일환으로,
- 신혼가구에 대해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전세 자금 금리 및 한도 등을 우대한다고 밝혔다.

【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(구입)】

- 금리 우대(0.2%p) 및 신청시기 조정(예정일 2개월전→3개월전)
 -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대출받는 경우 현행 연 2.3% ~ 3.1%에서 0.2%p 우대된 연 2.1% ~ 2.9%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.
 - * (예시) 디딤돌대출 1억원 이용시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가 절감
 - 다만,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.2%p 우대와 신혼부부 0.2%p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.
 - 또한,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.

【② 버팀목 전세대출】

- 금리 우대(0.2%p), 한도 상향(1~2천만원) 및 신청시기 조정
 -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연 2.5% ~ 3.1%에서 0.2%p 우대된 연 2.3% ~ 2.9%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,
 - * (예시) 버팀목대출 4천만원 이용시 연간 약 8만원의 이자가 절감
 - 또한, 대출한도를 수도권외의 경우 1억원에서 1.2억원으로,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,
 - 아울러,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‘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.

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서지웅 사무관(☎ 044-201-33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인터넷에 “주택도시시기금 포털”로 검색하시거나 국토부 콜센터 ☎ 1599-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제도 개요

□ 내집마련 디딤돌대출

구분	내집마련 디딤돌 대출('14.1.2 출시)					
신청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소득 6천만원 이하 (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) 무주택자 또는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처분 유주택자 인정('16년 한시) 					
대상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가 6억원 이하, 전용 85㎡ 이하(수도권 제외한 읍·면지역 100㎡ 이하) 					
대출금리 (고정)	소득 수준 (부부 합산)		만기별 금리			
			10년	15년	20년	30년
	연소득 2천만원이하		2.3	2.4	2.5	2.6
	2~4천만원이하		2.5	2.6	2.7	2.8
	4~6천만원이하 (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이하)		2.8	2.9	3.0	3.1
	(우대) ① 다자녀가구 0.5%p, 장애인·다문화가구, 생초자, 신혼부부 0.2%p 우대 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0.1%p,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0.2%p 우대 *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,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 ** 중복적 우대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2%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2% 적용					
대출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억원 (DTI 60% 이내시 LTV 70%까지) * 다만, '16년말까지 DTI 60~80% 이내시 LTV 60%까지 허용 					
대출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기 10년, 15년, 20년, 30년 (거치 1년 또는 비거치) 					

□ 버팀목 전세대출

구분	버팀목 전세자금대출('15.1.2 출시)				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(신혼부부 등은 6천만원 이하) 				
대상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차전용면적 85㎡ 이하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100㎡) 				
임차보증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도권 3억원 이하, 지방 2억원 이하 				
대출금리 (변동)	보증금				
	소득 한도		5천만원 이하	5천만~1억	1억초과
	2천만원 이하		2.5	2.6	2.7
	2천~4천만원		2.7	2.8	2.9
4천~5천만원 (신혼부부 등 6천만원이하)		2.9	3.0	3.1	
	(우대)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층, 한부모가정에 1%p 우대, 다자녀가구 0.5%p, 고령자·노인부양·다문화·장애인가구, 신혼가구 에 0.2%p 우대				
대출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%(수도권 1억원 및 지방 8천만원 이하) 다만, 다자녀 가구는 수도권 1.2억원 및 지방 1억원 이하, 신혼가구는 수도권 1.2억원, 지방 9천만원 이하 				
상환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년 이내 일시상환(4회 연장, 최장 10년 가능) 				